

수출농산물 선별비 지원

- ◇ 수출농산물에 대한 선별비 지원으로 수출 의욕 고취 및 충북 신선농산물의 수출 경쟁력 제고
- ◇ '24년 수출물류비 지원 폐지 대비 수출농가의 경쟁력 확보

☞ 추진근거 : 「충청북도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 제8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선적기준)
- 사업비 : 433,333천원(도비 130,000, 시·군비 303,333)
 - ※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대상 : 도내 농식품을 수출한 농가, 작목반,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등
- 지원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임산물*, 신선김치** 등
 - * 밤, 감(곶감), 대추 등 : 과실류 최저 단가 적용 / ** 신선김치, 배추 : 양배추 단가 적용
- 지원기준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공동선별비 지원) 지원단가 적용
 - ※ 품목별 공동선별 지원단가가 없는 품목은 농산물 종류별 최저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 지원내용 : 기본지원(선별비의 50%)+수출촉진 인센티브(선별비의 30%~50%)

□ 추진요령

- 사업계획 수립

< 기본지원 >

- 지원대상(예산범위 내에서 농업인, 수요조사자 우선지원)
 - 농가, 작목반, 생산자단체(도내 신선농산물 생산)
 - 수출업체(도내 생산 신선농산물·농식품 수출)
- 지원신청 : aT ISP에 수출실적 입력 및 시군에 선별비 지원신청
- 지원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임산물, 신선김치 등
- 지원기준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공동선별비 지원) 지원단가(50%) 적용

< 수출촉진 인센티브 >

- 지원대상 : 농산물 수출단지(농식품부, 도 지정), 수출통합조직 회원사
- 지원내용 : 지원단가(선별비용 100%)의 일정비율 추가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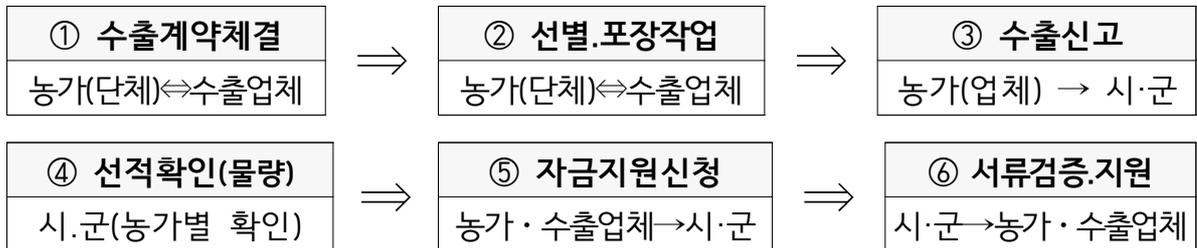
구 분	일반 수출단지	도지정 우수 수출단지	수출통합조직 회원사
비 율	30%	40%	50%

○ 사업계획 변경

- 시·군은 사업대상자의 수출실적과 수출품목 동향을 매월 면밀히 조사하고 집행예상액을 분석하여 불용예상액을 도에 보고
⇒ 도에서는 부족 시군에 재배정,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관리

○ 사업비 집행

- 지원체계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전산시스템(ISP), 수출신고필증 등을 수출실적 증빙자료로 활용
- 수출업체는 수출지원시스템(ISP)에 매 익월 5일까지 수출실적 입력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지원시스템 : <http://atess.at.or.kr>

< 선별비 지급 >

- 수출실적에 따른 자금집행은 가급적 1개월마다 하되, 시·군 형편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음.
- 같은 물량에 대하여 농가(법인, 단지)와 수출업체가 중복 신청하지 않도록 수출신고필증 확인 철저
- 지원신청서 검토 및 수출실적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세관 : 수출이행여부 확인 ※ 관세청(UNI-PASS) 수출이행내역 확인
 - aT 전산시스템 : 도내 수출실적 반영 여부 수출실적 확인

□ 선별비 지원 예시

【수출농산물 선별비 지원】

○ (수출) 배 선별비 지급(kg당 선별비용 214원)

$$\cdot 1,000\text{kg}(1\text{톤}) \times 214\text{원} \times 50\% = 107,000\text{원}$$

※ 수출 확인방법 : aT수출지원시스템 및 관세청(UNI-PASS)을 통해 수출실적 및 수출이행 내역 확인, 농가(생산자단체)-수출업체 간 수출계약서, 수출대금 입출 내역 등 확인

【수출촉진 인센티브 지원】

- (수출) 배 선별비 지급(kg당 선별비용(214원)의 50% 107원)

$$\text{- 기본지원 } 1,000\text{kg}(1\text{톤}) \times 214\text{원} \times 50\% = 107,000\text{원}$$

$$\text{- 인센티브 지원 : } 214,000\text{원} \times 30\%^* = 64,200\text{원}$$

$$\therefore \text{총 지원금액 : } 107,000\text{원} + 64,200\text{원} = 171,200\text{원}$$

- (수출) 장미 선별비 지급(본당 선별비용(41원)의 50% 20.5원)

$$\text{- 기본지원 } 1,000\text{본} \times 41\text{원} \times 50\% = 20,500\text{원}$$

$$\text{- 인센티브 지원 : } 41,000\text{원} \times 30\%^* = 12,300\text{원}$$

$$\therefore \text{총 지원금액 : } 20,500\text{원} + 12,300\text{원} = 32,800\text{원}$$

* 30% : 일반 수출단지 인센티브 지원비율

【수출농산물 선별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 ① 농가수취금액 및 수출물량 확인에 필요한 제반서류 미 제출 시
- ② 수출실적, 계약업체 등 허위 작성 및 부당한 방법으로 수출농산물 선별비를 수령하였을 경우 지원금 회수
- ③ 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로 도내 업체(생산자)로 표기되지 않고 생산자확인서와 aT 전산시스템에 도내 생산지 표기되지 않은 물품
- ④ 실제 집행기관인 시군에서 확보된 예산이 부족한 경우
- ⑤ 관계기관(aT 등)에서 위반자 제재사항 통보 시

* 수출신고필증 상 ③번 제조장소에 중복 우편번호가 기재된 수출분만 지원

※ 신청(구비)서류

- ① 수출농산물 선별비 지원신청서 1부 [서식 1]
- ② 수출용 농산물 재배 및 공급계약서 사본 1부 [서식 2]
- ③ 농식품 수출실적 증명서 1부 [서식 3]
- ④ 수출신고필증(수출업체 원본대조필)
- ⑤ 농가별 세부내역서 1부 [서식 4]
- ⑥ 수출실적 증명서(타 시도 수출 대행업체를 통해 수출하였을 경우) 1부 [서식 8]

□ 행정사항

- 수출농산물 선별비 예산 적기 집행
 - 수출농가·기업이 수출 필요 시기에 예산 지원 요청을 하도록 홍보하여 적기 집행(하반기 집중 신청 지양)
- 홍보 및 사업추진 지도
 - 수출농산물 선별비 지원계획 대농민 홍보강화 : 수시
 - TV, 라디오, 신문, 시군 회보, 새해 영농설계 교육 등 활용
- 수출사실 확인 및 자금 집행
 - 시군에서는 생산자 및 수출업체의 수출신고에 따라 수시 현지 출장 및 수출사실 확인
 - 수출 농가 및 작목반, 생산자 단체는 수출일지를 작성 비치 [서식 6]
 - 시장·군수는 농가 및 작목반, 생산자 단체, 수출업체가 제출한 수출농산물 선별비 지원 신청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후 생산자 및 수출업체에 자금교부
- 사업비 교부 및 정산
 - 사업비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및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 '24년 도비보조금 교부 : 2024. 2. 8. 한
 - 시군 사업 시행 및 추가 수요조사(인센티브 소요비용, 신규 수요)
 - ※ 부족예산 추경 확보 노력
 - '24년 추진실적 제출 : 각 분기말 기준 익월 5일 한 [서식 7]
 - '24년 도비보조금 정산서 제출 : 2025. 1. 19. 한 [서식 8]

【붙임1】

2023년 품목별 공동선별비용 지원단가에 따른 선별비 지원기준

구분	품목	선별비용 (원/kg)	kg당 지원단가 (선별비용의 50%, 원)	구분	품목	선별비용 (원/kg)	kg당 지원단가 (선별비용의 50%, 원)
채소류	멜론	113	56.5	과실류	배	214	107
	무	83	41.5		복숭아	229	114.5
	방울토마토	132	66		사과	174	87
	파프리카	155	77.5		포도	333	166.5
	단호박	93	46.5		참다래	186	83
	브로콜리	132	66		매실	105	52.5
	수박	48	24	서류	감자	100	50
	토마토	104	52		고구마	163	81.5
	애호박	83	41.5	버섯류	느타리버섯	260	130
	양배추	117	58.5		새송이버섯	260	130
	양상추	91	45.5		양송이버섯	456	228
	양파	94	47	화훼류	국화	44(본당)	22(본당)
					장미	41(본당)	20.5(본당)

※ 품목별 공동선별 지원단가가 없는 품목은 농산물 종류별 최저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예) 임산물 : 과실류 최저단가(매실) 적용, 신선김치 및 배추 : 양배추 단가 적용

【붙임2】

2024년 신선농산물 수출통합조직 현황

품목		조직명 (지정일)	소재	공동 브랜드
통합 단계 (12)	파프리카	코파(주) (18.03.21.)	대전	
	버섯류	케이머쉬(주) (18.03.21.)	서울	
	딸기	(주)케이베리 (18.12.28.)	진주	
	포도	한국포도수출연합(주) (19.05.23.)	상주	
	절화류	(주)케이플로라 (19.12.31.)	전주	
	배	한국배수출연합(주) (20.04.01.)	아산	
	토마토	한국토마토수출(주) (21.07.01.)	창원	
	감귤	한국감귤수출연합(주) (21.12.31.)	제주	
	단감	(농)한국단감수출(주) (22.12.29.)	창원	
	키위	(농)한국키위수출(주) (22.12.29.)	제주	
	배추류	(농)케이케비지(주) (23.12.27.)	부산	
	무	(농)한국무수출(주) (23.12.27.)	제주	
선도 단계 (4)	사과	케이애플 (11.1.24.)	대구	
	마늘	남해농협조합공동법인 (21.1.11.)	남해	
	복숭아	(사)한국복숭아수출연합회 (23.12.27.)	상주	-
	아스파라거스	승운무역 (23.12.27.)	함안	-